

● 제29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3.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189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외 15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2월 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8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울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자폭탄피해자의 지원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효과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나.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구체화함.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와 그 자녀 그리고 손자녀에 대해 지원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피해자의 지원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 제2조 정의조항에서 지원대상인 원폭피해자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과 그 자녀 및 손자녀로 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개정안 제4조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①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의료 및 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원폭피해자 추모에 관계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어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이어서 개정안 제7조에서는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나.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2조)

- 상위법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그 피해자를 원자폭탄이 투하된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 혹은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혹은 당시 임신 중인 태아 등¹⁾으로 하고 있음.
 - 2019년에 실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자는 2,283명이며, 이중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214명인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원자폭탄 피해자는 1세대와 2세대 모두에서 일반인의 장애 발생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²⁾ 이에 개정안에서는 그 지원 대상을 자녀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원자폭탄 피폭 후유증의 대물림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원 대상을 자녀 및 손자녀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다. 피해자 지원사업 및 의료비 지원 등 (안 제4조, 안 제5조)

- 동 개정안에서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료 및 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추모와 관계된 사항 등의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2) 보건복지부,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04.24.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립병원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대한적십자사가 한국과 일본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본정부에서 발급하는 건강수첩 소지자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1세대)이며, 의료비와 진료보조비 외에 연 1회의 종합건강검진, 장례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현황 〉

한국정부		일본정부	
지원대상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지원대상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
진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63명) 진료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상한액(30만 엔) 이내 : 진료비 전액 ▪ 연간상한액 초과 : 일본의료수가 재산정 후 지원
장제비	150만 원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장례비	20만6000엔
건강검진비	연 1회(35만 원)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건강검진비	연 1회(35만 원)
진료보조비 (등록자 전원대상)	매월 10만 원	원호수당*	4종 중 1종 수령 * 의료특별수당(140,000엔), 특별수당(51,700엔), 건강관리수당(34,430엔), 보건수당(17,270엔) 중 질병의 유무 경중에 따라 월정액 수령
복지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전액(연 15억 원) (입주자 110명)	도일(일본 의료기관) 치료	희망자
관련 근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관련 근거	①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원호법) ② 재한원폭피해자지원사업 등 업무협약
연간 소요액	49억 원	연간 소요액	204억 원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 중

-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지원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사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개정안 제5조의 지원사업은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와 관련한 사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7조)

- 동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자문 및 평가 외의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 등의 자문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에서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개최 횟수,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 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종합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이외의 원자폭탄 피해자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원자폭탄피해자의 피폭 후유증이 대물림 되는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문 의 처

김현정 입법조사관 (02-2180-8155)